

# 임신·출산 진료비,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공약번호	사업구분		사업주체				추진상황					기간	
	신규	계속	국	도	군	민간	완료	완료 후 계속	정상 추진	일부 추진	보류	임기 內	임기 後
1-1	○				○				○			○	

임신·출산 관련 장애 제거를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
  -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  -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
- 사업기간 : 2019년 ~
- 사업대상 : 관내 주소를 두고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인 부부
  -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: 35명
  -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: 100명(50쌍)
- 주요내용
  -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
    - 기준중위소득 130%이하 :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100만원 이내 지원
    - 기준중위소득 130%초과 :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50만원 이내 지원
  - 관내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1회 30만원 이내 지원

## □ 연차별 세부추진계획

-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  - 지원대상 : 관내 주소를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(접수일 현재 부인연령 만44세 이하)로서 난임 시술대상자
  - 계획인원 : 35여명

- 지원내용
  - 난임부부 시술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50만원 ~ 100만원 이내 지원
    - : 기준중위소득 130% 이하 - 100만원 이내
    - : 기준중위소득 130% 초과 - 50만원 이내
  -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연계, 최대 10회 지원
  - 지원항목 : 체외수정(신선4회, 동결3회), 인공수정3회
- 지원금액 : 50,000천원
  - 1,000,000원 × 15명 × 연2회 = 30,000,000원
  - 500,000원 × 20명 × 연2회 = 20,000,000원
- 지원절차 : 대상자 지원신청 → 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→ 시술완료 → 시술비 선납부 → 지원신청서 보건소 제출 → 지급
- 구비서류 : 시술비청구서, 시술확인서, 진료비영수증원본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## ○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

- 지원대상 : 관내 주소를 둔 난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로 부인연령 만44세 이하인 부부
- 계획인원 : 100여명(50쌍)
- 지원내용 : 관내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1회 30만원 이내 지원
- 검사항목(비급여)
  - 남자 : 정액검사
  - 여자 : 초음파, 호르몬검사, 나팔관조영술, 난소기능검사, 자궁암 검사, 균검사
- 지원금액 : 30,000천원
  - 300,000원 × 100명 = 30,000,000원
- 지원절차 : 난임 기초검사 → 검사비 선납부 → 지원신청서 보건소 제출 → 검진비 지급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의사진단서, 진료비영수증원본, 통장사본

## 그간 추진현황

- 2018년 7월 난임 부부 지원확대 계획 수립
- 2018년 8월 사회보장협의요청
- 2018년 10월 사회보장협의 승인(사회보장조정과-3754호, 2018. 10. 8.)

## 예상 문제점 및 조치계획

- 2019년 사업예산확보 ⇒ 2019년 당초예산 반영
- 사업추진 조례제정  
⇒ 2019년 1~3월 :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
연계 또는 단독 제정

## 소요예산

(단위:백만원)

재 원	총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비고
예산액	400	-	-	400	-	

## 재원 확보대책

(단위:백만원)

재 원	총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비고
총 계	400	-	-	400	-	
2018년	-	-	-	-	-	
2019년	80	-	-	80	-	
2020년	80	-	-	80	-	
2021년	80	-	-	80	-	
2022년	80	-	-	80	-	
2023년 이후	80	-	-	80	-	